

안전보건 관리 규정
종합전기(주)

2020. 04

종합전기(주)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종합전기㈜ (이하 "회사" 라 칭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관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관리에 대하여 규정 하며 회사 임직원,임시 방문객 및 협력업체 또는 도급회사 직원이 회사에 있는 동안 적용 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회사 노사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무르설비,원재료등에 의하거나 작업,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한다.

2. 작업환경측정(이하 "측정"이라 한다)

작업중 발생하는 각종 유해인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기관에 의뢰,실시하는 분석,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안 전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4. 사 고

불안정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근로자의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비능률적인 것으로서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5. 안전관리

사업장에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업무라 할 수 있다.

6. 보건관리

근로자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심한 영향을 주는 각종 조건을 제거 하므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재 해

사고의 최종 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8. 중대재해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는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9. 불안전한 행동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상적 능률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 벗어나는 행동 즉 위험에 노출되거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동을 말한다.

10. 불안정한 상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상태 조건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하나다)

12.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 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 4 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안전르 우선으로 하며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한다.

제 5 조 (사고예방 책임)

회사는 사업장내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회사의 전직원이 공동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근로자의 의무)

회사의 전 임,직원은 이 규정과 이와 관련된 사항은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실시 하는 산업재채의 예방에 관한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 7 조 (법령요지의 게시)

법령요지의 게시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준한다.

제 8 조 (정보청구의 범위)

정보청구의 범위는 법 11조 2항에 의거 근로자 대표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근로자 대표는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항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 범위 및 활동 시간을 보장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 10 조 (조직의 구분)

조직은 스텝 조직의 환경안전팀과 라인조직의 관리감독자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1. 스텝조직의 안전,보건관리자는 유자격자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2. 부서 팀 안전보건관리감독자(이하 "팀,부서 안전보건관리감독 자")는 팀(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과 또는 파트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3) 팀 안전보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분장

- 4) 산재 요양자 면담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
3. 부서 또는 파트의 안전보건관리감독자(이하 "부서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팀 과장급 선임 직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팀 안전보건관리감독자의 임무 보좌에 관한 사항
 - 2) 팀의 안전보건관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 3) 파트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 4) 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감독에 관한 사항
 - 5) 유해 위험방에 관한 조치 사항
 - 6) 재해발생시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7) 환경안전침과의 업무협조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8) 기타 산업법상에서 정한 사항
4. 반장은 안전보건관리감독자이며 당연직 안전담당자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 한다.
 - 1) 일반 또는 신규 및 작업 전환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기록유지 및 위험 예지 등 일일 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기록 유지 사항
 - 3) 자체검사 기계기구에 대한 필요시 검사 및 검사 기록일지 유지에 관한 사항
 - 4)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일상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 5) 유해위험작업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6) 안전표지의 설치의뢰 및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 7) 작업안전표준의 게시 및 현장보존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8)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표시내용 확인 및 신규등록에 관한 사항
 - 9) 기타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AEH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5. 부서(팀) 안전담당자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활동 추진을 위해 부서(팀) 단위로 부서,팀내의 선임 된자를 말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임무를 보좌한다.
6. 현장 안전보건 실무위원회 구성

현장 전반에 걸친 안전보건 정보의 공유와 현장관리 감독자의 참여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현장소장), 팀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반 안전관리감독자가 참여하는 현장 안전보건 실무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한다.

제 11조 (안전보건관계자의 임면)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개진 또는 활동등을 이유로 승진,승급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법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 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 12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 13조 (안전관리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
2.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2.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선정 보좌 및 지도 조언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4.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5. 산업재해에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7. 관계법령 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중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 14조 (보건관리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직원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한다.
2.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4.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5. 법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6.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 15조 (관리감독자)

1. 회사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사업장 및 직원들은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 목표와 방침에 따른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2. 소관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3. 업무관련 사고방지책, 안전보건 기준의 숙달 및 장비, 장치의 점검사용에 관한 교육
 4. 사고 및 재해원인 조사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재발 방지대책 수립 시행
 5. 위험물 기타 불안전 요인의 신속한 제거와 시정 지도
 6. 위험성평가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
 7. 소속 직원에 대한 다음 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지도 감독
 8. 안전 기준 및 수칙 준수
 9. 불안전 요인의 발견 즉시 시정 또는 상부기관 보고
 10. 사고 및 재해발생시 처리 요령

제 3장 안전보건교육

제 16조 (안전보건교육의 구분)

1.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2.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공사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신규자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 17조 (교육계획 수립)

1.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안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의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시설물 안전교육 및 발주자의 안전 관련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 한다.
2. 교육실시 결과는 교육결과 시스템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 하여야 한다.

제 18조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담당업무 종사 전에 8시간 이상의, 작업내용 변경자에 대하여 담당업무 종사 전에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9조 (특별안전보건교육)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단, 제40호의 경우에는 8시간 이상
2.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단,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제 20조 (정기안전보건교육)

다음 각 호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1/2이상을 집체교육 형식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1. 사무직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제 21조 (물질안전보건교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안법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소속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임·직원을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제 22조 (직무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 4장 안전관리

제 23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1.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산업재해 감축목표가 포함된 안전 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3.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전년도 안전보건 관리 계획의 이행 실적을 대표이사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제 24조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중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2.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는 관리책임자에게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긴급한 경우 근로자는 안전·보건조치를 우선 이행하고, 사고의 개요, 작업중지내역, 조치 결과 등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사고의 원인과 요청내용 및 그 조치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제 25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방 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2.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방호장치만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3. 작업자는 방호조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신고할 것.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신고가 있을 시,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6조 (유해 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1. 산안법에 따른 유해 위험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적법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 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유해 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계획을 매년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 수립 시행하고 검사 결과 다음 호의 사항을 기록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 검사년월일, 검사방법, 검사항목, 검사결과, 검사자의 성명,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 27조 (안전수칙)

1. 현장 내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2. 일반수칙은 전작업장에 공통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관리자 주관으로 제정한다.
3. 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용접작업장, 보일러실, 인화성 물질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당해 안전관리자 주관으로 제정하여 사용한다.
4. 안전수칙은 당해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직원은 이를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제 28조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근로자가 단독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29조 (작업중지 요청제)

1.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운영·관리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요청제의 마련 여부를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3. 제1항의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4.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제1항의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30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현장에서 보관 또는 저장되어 있는 위험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은 관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저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며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제 31조 (안전보건표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표지 및 안전수칙을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작업을 실시 할 경우 작업장 부근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3. 직원은 항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보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지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건관리

제 32조(근로자 건강진단)

1.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실시 시기 및 대상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시행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강진단 방법 등은 산안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 33 조 (진단결과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 근로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4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자에 대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에 걸린 자
 3.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2. 건강진단 결과 유해 물질에 중독된 자는 당해 업무로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선 안 된다.

제 35조 (보호구 착용 작업등)

1. 회사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주기를 정하여 소요량을 구매, 작업장별로 작업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지급 착용하도록 하되, 반드시 적합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모든 직원은 작업 중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을 금한다.
4.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5.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상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하여서는 안 된다.

제 3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 37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1. 회사는 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2.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산안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와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한다.
5.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 38조 (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1. 재해(직원, 이용자, 시설물 등)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신속히 회사의 "재난 대응기준"에 따라 안전담당부서 등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병원에 연락, 시설물 접근금지 등 사고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9조 (긴급조치)

1.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하고 만약 재해자가 의식이 없을 시에는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 40조 (비상연락망)

재해 발생 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을 조직 운영한다.

제 41조 (사고조사 및 보고)

1.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업무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2. 안전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

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3. 안전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4. 사고 조사는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한다.

5.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 실시한다.

6. 안전관리자(직업병 관계는 보건관리자)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 3년간 유지 관리토록 해야 한다.

제 42조 (재해분석)

안전·보건관리자는 재해현황을 총괄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7장 위험성 평가

제 43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계획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업무기준을 따른다.

제 44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최근 3년간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산안법」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업무기준에 따른다.

제 45조 (위험성평가 주기)

1.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2.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에 대해서는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 46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1.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 2조 (효력)

이 규정이 노사 단체협약 및 전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결정 사항과 상이할때는 노사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